

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결과

- 가. 접수일자 및 제출일자 : 1997. 11. 28
- 나. 회 부 일 자 : 1997. 12. 2(재회부 : 1998. 2. 7)
- 다. 상 정 일 자 : 1998. 2. 19(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제5차도시산업위원회상정, 채택)

2. 취지설명요지(소개의원 : 구태희 의원)

- 청원인들의 주택에 지반침하로 인한 방바닥 및 벽 등의 균열이 심하고 방안의 누수현상까지 있는등 주민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며 신축부지와 접한 2필지 지주 2명에게는 건물매입 계약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인접 4동의 주택 피해건은 구두상 보상약속만하고, 시공회사의 부도로 잔금 및 피해보상이 중단된 상태로
- 집행기관에서는 피해보상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삼창프라자 건축물 신축부지와 접한건물 2동은 합의된 상태에 있고
- 합의된 2동의 건물 뒷편에 있는 4동은 건물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구두상으로 사업주체와 피해당사자간 합의점에 접근된 상태에 있어
- 특히 현재 시공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사업주가 시공자를 재선정하여 변경할 계획이 있어

-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수리후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의회 의견서를 통보함이 옳을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(김상수 의원)

-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의회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 동의 제의

6. 심사결과

-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 의회의 의견서를 채택

붙 임 : 의견서 1부. 끝.